



# LEGAL UPDATE

디지털금융

Mar. 2023

##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논의 동향

금융당국은 TF를 구성하여 은행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I. 경과

2023. 2. 15.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 후속조치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가 구성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3. 2. 22. 제1차 TF회의를 개최해 6대 검토과제를 선정하고, 6월말까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며, 2023. 3. 2.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II. 6대 검토과제 주요 내용

6대 검토 과제는, ① 은행권 경쟁 촉진, ② 금리 체계 개선, ③ 보수체계개선, ④ 손실흡수능력 제고, ⑤비이자이익 비중 제고, ⑥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입니다.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내 경쟁 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은행권 진입 정책(스몰라이센스·챌린저 은행 등),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금리 체계 개선**을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이 검토됩니다.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Say-on-pay(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도입, Claw-back(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 강화 등이 검토됩니다.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비이자이익 비중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은행권의 이익 중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실적 공시 도입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 III. 제1차(2023. 3. 2.) 실무작업반 주요 논의 내용

#### 1. 스몰라이센스 및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은행이 수행중인 업무범위를 세분화한 특화은행 설립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예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혹은 벤처기업대출 전문은행, 혹은 주택담보대출 혹은 지급결제 특화은행, 중·저신용자 전문은행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진입규제 방식으로는 크게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제1안은 단일 스몰라이센스 도입

방식으로, 개별 인가 시 심사 및 조건 부가 등을 통해 업종과 영업방식 등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제2안은 은행업무(여수신, 환업무, 내·외국환, 채무보증, 어음인수 등), 영업 형태(거래상대방(개인, 기업), 영업구역(전국, 지방), 영업점(온라인, 오프라인) 등)를 각각 세분화하여 선택·조합하는 방식입니다.

## 2. 은행업 추가 인가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설립 인가를 내주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에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할 경우 사업모델 다양화를 통해 금융지주회사간 경쟁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빅테크 플랫폼과의 경쟁에서도 다양한 혁신 및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되는 점 등이 장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플레이어의 수를 늘리는 것 보다 금리차에 의한 이익 의존도를 낮추고 은행 간 차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 3. 저축은행·지방은행 전환(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지방(저축)은행이 시중(지방)은행 인가요건(자본금, 지배구조)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시중(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관련하여, ①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저축은행 간의 합병 허용, ② 두 개 이상의 지방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한 지방은행지주에 대한 IT 시스템 공동사용을 통한 비용절감, 계열사간 정보공유 완화 등을 통한 시중은행과의 경쟁환경 조성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4. 카드사 종합지급 결제 업무 허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은행 수준의 보편적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제도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예금 및 지급결제 부분에서 은행의 유효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은행 산업의 과점 이슈를 완화하고, 핀테크와의 경쟁 등을 통해 핀테크 Scale-up과 함께, 카드사 고객에게 신유형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동일 업무·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 하에 정부, 한국은행 및 업권 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21년 발의된 바 있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 기반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여수신 업무를 제외하면 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전자금융업자 입장에서는 직접 금융결제망에 참가함으로써 기존 금융회사 연계 계좌를 이용한 방식에서 발생했던 수수료 등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5. 증권사 법인결제 업무 허용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되면(금융결제원 규약 개정 필요), 기업들은 증권사를 통하여 단순 송금 외 CMS(급여 등 소액 대량 자금의 이체)와 PG(기업·고객간 전자상거래 대금의 이체) 등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IB 기능 강화, 지급결제 효율성 개선 및 비용감소 등의 장점이 있으나, 증권사의 은행화로 인한 금산분리 정책 실효성 저하,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이 대기업 계열 증권사로 결제계좌를 집중하면 증권사가 재벌의 사금고화가 되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 6.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보험회사 경영업무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를 개정), 보험회사에 종합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검토되었습니다.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될 경우, 개인고객은 보험사를 통해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및 연금 지급, 각종 결제업무 등이 가능해지며, 법인고객은 보험사를 통한 CMS(급여 등 이체) 및 PG(상거래대금 등 이체)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 7. 가상자산 실명확인 계좌 발급 기관 확대

은행 외 금융회사(증권사 등)에 실명확인계좌 발급 업무 허용하자는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증권사 등은 은행에 비해 투자서비스, STO 등과 연계 등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 유인이 높아 관련 신규서비스 확대가 가능하므로 본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이고 정책 방향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실명계정 발급 금융기관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IV.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 발표

금융당국은 2023. 3. 3. 제1차 실무작업반(2023.3.2. 개최)의 보고 논의사항이었던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 현재 공시중인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추가 비교공시, ②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 ③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등이며, 금년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 V. 향후 논의 예정 내용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는 2023.3.8(수)에 예정되어 있으며,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과제의 실효성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제34차 실무작업반 회의도 3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며 성과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이 집중 점검될 예정입니다.

## VI. 시사점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관련하여 논의되는 과제들은 금융회사, 플랫폼 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업무 범위, 영업 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며, 특히 그 논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플랫폼 기업 등은 관련 논의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디지털금융팀은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s

### 이주용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46

E. [jylee@yoonyang.com](mailto:jylee@yoonyang.com)

### 정현석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047

E. [hsjung@yoonyang.com](mailto:hsjung@yoonyang.com)

### 이보현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069

E. [bhlee@yoonyang.com](mailto:bhlee@yoonyang.com)

### 최용호

파트너변호사

T. (+82) 2 6182 8396

E. [yhchoi@yoonyang.com](mailto:yhchoi@yoonyang.com)

### 주민석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21

E. [msjoo@yoonyang.com](mailto:msjoo@yoonyang.com)

### 김용태

고문

T. (+82) 2 6003 7043

E. [kimyt@yoonyang.com](mailto:kimyt@yoonyang.com)